

의정부지방법원 2020. 9. 8 선고 2019나207616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재판경과

의정부지방법원 2020. 9. 8 선고 2019나207616 판결

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시법원 2019. 5. 23 선고 2018가소28646 판결

전 문

원고, 항소인A

피고, 피항소인B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건우 담당변호사 조남식

변론 종결2020. 7. 7.

판결 선고2020. 9. 8.

제1심판결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9. 5. 23. 선고 2018가소28646 판결

주 문

1.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.
피고는 원고에게 2,907,6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. 1. 5.부터 2020. 9. 8.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한다.
3. 소송총비용 중 50%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.
4. 제1항 중 돈 지급을 명하는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 판결 취소. 5,631,123원 및 이에 대한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(원고는 항소심에서 청구금액을 일부 감축하였다).

이 유

1. 정산의무의 발생

원고는 2011. 1. 무렵 피고와 비파괴검사용역 하도급계약(피고가 거래처로부터 의뢰받은 검사용역을 원고에게 다시 의뢰하여 이행한 다음, 피고가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대금 중 기술료 등을 공제한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)을 체결하였고, 원고와 피고가 2012. 4. 23. 작성한 합의서(갑1)에는 공제할 기술료는 매출액의 4%로 적혀 있는 사실은 서로 다툼이 없다.

원고는 2013. 거래한 내역 중 제1,2호기 터빈 주요배관 두께측정공사 관련하여 피고가 마음대로 기술료를 4%가 아닌 10% 공제하였으므로 6% 해당액을 정산금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.

피고는 원고가 물색한 거래처와 계약한 경우에는 공제 기술료가 4%이지만 피고 스스로 물색한 거래처와 계약한 경우에는 공제 기술료가 10%이므로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한다.

원고와 피고가 2012. 4. 23. 작성한 합의서(갑1)에는 공제할 기술료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차이가 없고, 공제할 기술료 금액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차이는 구두로 양해된 당연한 사항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. 따라서, 피고는 원고에게 6% 해당액인 5,631,123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19. 1. 5.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2. 상계

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19. 1. 15.자 2018카합10476 결정(을3. 2019. 1. 29. 확정)에 따라 원고에게 2,723,477원의 소송비용액 상환채권을 가지므로 그 채권으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.

따라서, 피고는 원고에게 2,907,646원(5,631,123원 - 2,723,477원)을 반환해야 한다.

3. 결론

원고의 청구는 앞서 본 범위 내에서 받아들여야 한다.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배척한 제1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으므로,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앞서 본 범위 내에서 피고에게 돈의 지급을 명하고,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한다.

재판장판사박이규

판사이흥권

판사이효두